|  |  |  |
| --- | --- | --- |
|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2009년 9월 1일 교통운수부 반포, 2013년 4월 12일 교통운수부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5년 6월 24일 교통운수부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를 규율하고 택배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의 신청, 심사허가 및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관리기구, 그리고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성급 이하 우정관리기구(이하 우정관리부서라 함)는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는 공개, 공평, 공정 및 편리 효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우정관리부서가 발급한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우정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택배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2장 허가조건**  **제6조** 택배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법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구역을 벗어나서 경영 시에는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그가 신청한 경영 지역범위를 아우르는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4) 서비스수락, 서비스항목, 서비스요금, 서비스지역, 배상방법, 신고수리 방법 등을 포함한 엄격한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접수검사, 분류운송, 우송배달, 업무조회 등 제도를 포함한 완벽한 업무시행규범을 갖추어야 한다.  (5) 우송배달 안전보장, 택배서비스 인원과 사용자의 인신안전, 사용자 정보안전, 사용자 정보안전 보장제도와 국가 안전표준에 부합하는 제반 안전조치를 포함한 건전한 보장제도와 조치가 있으며, 대금 대리수취 업무를 개설 시에는 자영방식으로 대금 대리수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완벽한 리스크통제 조치와 자금 결제시스템을 구비한 동시에 위탁측과 수하인 지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아래의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택배업무 경영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운송, 배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시 내의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택배우편물(우편물)의 전화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내 격지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상술한 전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 택배우편물(우편물) 추적조회 정보네트워크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3) 《택배업무 직원 국가직업 기능표준》에 부합하고 자격인정을 거친 택배 업무직원을 확보해야 하며, 택배 업무직원 중에는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직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성내 격지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택배 업무직원 중에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직원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아래의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한 경영지역 범위에 적합한 네트워크와 운송, 배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면적이 적합한 밀폐 택배우편물(우편물) 처리장소를 확보하고 국무원 우정관리부서 및 국가안전기관의 의법 직책 수행 요구에 부합하며, 아울러 상응한 처리설비, 모니터링설비 및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통일적인 컴퓨터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택배우편물(우편물) 배달 추적조회 정보네트워크를 확보함과 아울러 규정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갖 추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우정관리부서에 배달 택배 우편물(우편물)의 관련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택배업무 직원 국가직업 기능표준》에 부합함과 아울러 자격인정을 거친 택배업무 직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 및 각 분지기구 택배업무 중에는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직원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국제 택배업무 경영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네트워크와 운송, 배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면적이 적합한 밀폐 택배우편물(우편물) 처리장소를 확보하고 국무원 우정관리부서 및 국가안전기관, 해관의 의법 직책수행 요구에 부합함과 아울러 상응한 처리설비, 모니터링 설비 및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통일적인 컴퓨터관리시스템과 택배우편물(우편물) 우송, 배달 추적조회 정보네트워크, 규정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우정관리부서와 유관부서에 택배우편물(우편물) 우송, 배달 통관신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4) <택배업무 직원 국가직업 기능표준> 에 부합함과 아울러 자격인정에 통과된 택배업무 직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 및 각 분지기구 택배업무 직원 중에는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문자격을 취득한 통관신고, 검사신고, 검증신고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자는 편지를 경영하는 국내 택배업무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택배업무라 함은 우편물 접수 및 배달 전반 과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택배업무를 가리킨다.  우정기업 이외의 택배업무 경영기업(이하 택배기업이라 함)은 우정기업이 전문 경영하는 편지 우송, 배달 업무를 경영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의 공문을 우송, 배달할 수 없다.  **제3장 심사허가 절차**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의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서 경영하거나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신청 시에는 우정관리부서에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택배업무 경영허가 신청서  (2)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또는 기업법인 영업집조  (3) 장소사용증명서 및 이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상관 서류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13조** 우정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우정관리부서는 택배업무 경영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안전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4조** 신청인은 <택배업무 경영허가 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설립 또는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한 기업이 분공사, 영업점 등 비법인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법인 택배업무 경영허가증(부본)과 첨부된 분지기구 명부를 지참하고 분지기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등기를 해야 한다. 기업 분지기구는 영업집조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성급 이하 우정관리기구에 가서 등록 비치해야 한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합병, 분립하거나 또는 분지기구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우정관리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이 공포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했거나 또는 등록 비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법 등록한 후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수령 시에는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수령 신청서  (2)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의 허가 또는 등록 비치 서류  (3)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의법 발급한 영업집조  (4) 분지기구 방명록.  **제4장 허가증 관리**  **제17조**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의 허가범위와 유효기간에 따라 택배업무를 경영해야 한다.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 으로 한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택배업무 경영허 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허가 증을 발급한 우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허가 증을 교체 수령해야 한다.  **제18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관리는 연도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매년 4월 30일 전에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정관리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도 경영상황, 법률 및 법규 준수 상황 등을 포함한 연도보고서  (2)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부본(副本) 의 원본  (3)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제19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기업명칭, 기업유형, 지분관계, 등록자본, 경영범위, 경영지역 및 분지기구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우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변경 수속을 밟고 허가증을 교체 수령해야 한다.  **제20조** 택배기업이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경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증을 발급한 우정관리부서에 고지하고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아울러 우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아직 배달하지 못한 택배우편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법인 자격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신청인이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택배업무를 경영하지 않거나 스스로 연속 6개월 이상 조업을 중지한 경우  (4)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경영을 중지한 경우  (5) 택배업무 경영허가가 법에 의해 취소, 철회되었거나, 또는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이 법에 의해 회수 말소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22조** 우정관리부서는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의 발급, 변경, 말소 등 사항을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은 국무원 우정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위조, 개찬, 도용, 임대,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감독 검사**  **제24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대상 기업은 감독 검사를 접수하고 그에 협조해야 한다.  **제25조** 감독 검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택배업무 경영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자(책임자), 경영주소, 경영범위, 경영지역, 경영기간 등 중요사항이 반드시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등기 사항과의 일치 여부  (2)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의 변경, 연장, 말소 등 수속 처리 상황  (3)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지속적으로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가의여부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26조**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우정관리부서의 감독 검사인원은 최소 2인이어야 하며 아울러 집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인원은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그에 서명한 후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제27조** 우정관리부서는 감독 검사을 실시할 때 택배업무 경영기업의 정상적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제28조** 공민,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우정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행정허가 또는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우정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29조** 이 방법 제5조,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신청 시 신청인이 진실한 상황을 속이고 허위를 날조하여 경영허가를 취득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그 경영허가를 취소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위조, 개찬, 도용, 임대, 매매 또는 양도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1조** 택배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하고도 우정관리부서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항의 규정 이외에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 변경 수속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한 기한 내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록비치, 변경 수속을 하거나 또는 연도보고서를 제출할 때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를 날조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 택배기업이 택배업무 경영을 중지한 후 우정관리부서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고 <택배업무 경영허가증>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아직 배달하지 못한 택배우편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이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우정관리부서가 이 방법에 따라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 시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제출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기간이 지나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우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우정관리부서 업무직원이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업무 중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36조** 이 방법 제16조가 규정한 기업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을 공포하기 전에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등록 수속을 마치고 택배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택배업무 경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택배업무 경영요건에 도달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택배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37조** 이 방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2009年9月1日交通运输部发布；根据2013年4月12日交通运输部《关于修改〈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15年6月24日交通运输部《关于修改〈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的决定》第二次修正）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促进快递行业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快递业务经营许可的申请、审批和监督管理，适用本办法。  **第三条**　国务院邮政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邮政管理机构以及按照国务院规定设立的省级以下邮政管理机构（以下统称邮政管理部门）负责快递业务经营许可的管理工作。  **第四条**　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以及便利高效的原则。  **第五条**　经营快递业务，应当依法取得邮政管理部门颁发的《快递业务经营许可证》，并接受邮政管理部门及其他有关部门的监督管理；未经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快递业务。  **第二章　许可条件**  **第六条**　申请经营快递业务，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五十二条的规定，具备下列条件：  （一）符合企业法人条件；  （二）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经营的，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五十万元，跨省、自治区、直辖市经营的，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一百万元，经营国际快递业务的，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二百万元；  　　（三）有本办法第七条、第八条、第九条规定的与申请经营的地域范围相适应的服务能力；  　　（四）有严格的服务质量管理制度，包括服务承诺、服务项目、服务价格、服务地域、赔偿办法、投诉受理办法等，有完备的业务操作规范，包括收寄验视、分拣运输、派送投递、业务查询等制度；  　　（五）有健全的安全保障制度和措施，包括保障寄递安全、快递服务人员和用户人身安全、用户信息安全的制度，符合国家标准的各项安全措施，开办代收货款业务的，应当以自营方式提供代收货款服务，具备完善的风险控制措施和资金结算系统，并明确与委托方和收件人之间的权利、义务；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七条**　申请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经营快递业务的，应当具备以下服务能力：  　　（一）具备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经营快递业务的网络和运递能力；  　　（二）经营同城快递业务的，须提供寄递快件（邮件）的电话查询服务，经营省内异地快递业务的，除提供上述电话查询服务外，还应当有提供寄递快件（邮件）跟踪查询的信息网络；  　　（三）有符合《快递业务员国家职业技能标准》并通过资格认定的快递业务员，经营同城快递业务的，快递业务员中具备初级以上资格的不低于30%，经营省内异地快递业务的，快递业务员中具备初级以上资格的不低于40%。  **第八条**　申请跨省、自治区、直辖市经营快递业务的，应当具备以下服务能力：  　　（一）具备与申请经营地域范围相适应的网络和运递能力；  　　（二）有封闭的、面积适宜的快件（邮件）处理场所，符合国务院邮政管理部门及国家安全机关依法履行职责的要求，并配备相应的处理设备、监控设备和消防设施；  　　（三）有统一的计算机管理系统，有可提供寄递快件（邮件）跟踪查询的信息网络，并配置符合规定的数据接口，能够根据要求向邮政管理部门提供寄递快件（邮件）的有关数据；  　　（四）有符合《快递业务员国家职业技能标准》并通过资格认定的快递业务员，企业及其各分支机构快递业务员中，具备初级以上资格的均不低于40%。  **第九条**　申请经营国际快递业务的，应当具备以下服务能力：  　　（一）具备经营国际快递业务的网络和运递能力；  　　（二）有封闭的、面积适宜的快件（邮件）处理场所，符合国务院邮政管理部门及国家安全机关、海关依法履行职责的要求，并配备相应的处理设备、监控设备和消防设施；  　　（三）有统一的计算机管理系统，有可提供寄递快件（邮件）跟踪查询的信息网络，并配置符合规定的数据接口，能够根据要求向邮政管理部门和有关部门提供寄递快件（邮件）的报关数据；  　　（四）有符合《快递业务员国家职业技能标准》并通过资格认定的快递业务员，企业及其各分支机构快递业务员中，具备初级以上资格的均不低于50%；  　　（五）有获得专业资格的报关、报检、报验人员。  **第十条**　外商不得投资经营信件的国内快递业务。  　　国内快递业务，是指从收寄到投递的全过程均发生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快递业务。  　　邮政企业以外的经营快递业务的企业（以下称快递企业），不得经营由邮政企业专营的信件寄递业务，不得寄递国家机关公文。  **第三章　审批程序**  **第十一条**　申请快递业务经营许可，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经营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邮政管理机构提出申请；跨省、自治区、直辖市经营或者经营国际快递业务的，应当向国务院邮政管理部门提出申请。  **第十二条**　申请快递业务经营许可，应当向邮政管理部门提交下列申请材料：  　　（一）快递业务经营许可申请书；  　　（二）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的企业名称预核准通知书或者企业法人营业执照；  　　（三）场地使用证明以及本办法第六、七、八、九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材料。  **第十三条**　邮政管理部门应当自受理之日起四十五日内对申请材料审查核实，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快递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邮政管理部门审查快递业务经营许可的申请，应当考虑国家安全等因素，并征求有关部门的意见。  **第十四条**　申请人凭《快递业务经营许可证》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设立或者变更登记。  **第十五条**　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的企业设立分公司、营业部等非法人分支机构，凭企业法人快递业务经营许可证（副本）及所附分支机构名录，到分支机构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册登记。企业分支机构取得营业执照之日起二十日内到所在地省级以下邮政管理机构办理备案手续。  　　经营快递业务的企业合并、分立或者撤销分支机构的，应当向邮政管理部门备案。  **第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公布前按照国家有关规定，经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批准或者备案，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办理登记后经营国际快递业务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八十五条规定领取《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应当向国务院邮政管理部门提交下列材料：  　　（一）《快递业务经营许可证》领取申请书；  　　（二）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批准或备案文件；  　　（三）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颁发的营业执照；  　　（四）分支机构名录。  **第四章　许可证管理**  **第十七条**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按照《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许可范围和有效期限经营快递业务。  　　《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有效期限为五年。  　　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在《快递业务经营许可证》有效期届满三十日前向颁发许可证的邮政管理部门提出申请，换领许可证。  **第十八条**　《快递业务经营许可证》管理实行年度报告制度。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在每年四月三十日前向颁发《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邮政管理部门提交下列材料：  　　（一）年度报告书，包括年度经营情况、遵守法律法规情况等；  　　（二）《快递业务经营许可证》副本原件；  　　（三）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  **第十九条**　《快递业务经营许可证》企业名称、企业类型、股权关系、注册资本、经营范围、经营地域和分支机构等事项发生变更的，应当报邮政管理部门办理变更手续，并换领许可证。  **第二十条**　快递企业在《快递业务经营许可证》有效期内停止经营的，应当提前书面告知颁发许可证的邮政管理部门，交回《快递业务经营许可证》，并按邮政管理部门规定妥善处理未投递的快件。  **第二十一条**　遇有下列情形之一的,邮政管理部门应当依法办理快递业务经营许可的注销手续：  　　（一）《快递业务经营许可证》有效期届满未延续的；  　　（二）企业法人资格依法终止的；  　　（三）申请人自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证》后无正当理由超过六个月未经营快递业务的，或者自行连续停业六个月以上的；  　　（四）《快递业务经营许可证》有效期内停止经营的；  　　（五）快递业务经营许可依法被撤销、撤回的，或者《快递业务经营许可证》被依法吊销的；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二十二条**　邮政管理部门应当对《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颁发、变更、注销等事项向社会公告。  **第二十三条**　《快递业务经营许可证》由国务院邮政管理部门统一印制。  　　任何组织和个人不得伪造、涂改、冒用、租借、买卖和转让《快递业务经营许可证》。  **第五章　监督检查**  **第二十四条**　邮政管理部门依法对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企业进行监督检查，被检查企业应当接受和配合监督检查。  **第二十五条**　监督检查的主要内容：  　　（一）经营快递业务的企业名称、法定代表人（负责人）、经营地址、经营范围、经营地域、经营期限等重要事项，应当与《快递业务经营许可证》登记事项相符合；  　　（二）《快递业务经营许可证》变更、延续、注销等手续的执行和办理情况；  　　（三）经营快递业务的企业应当持续符合颁发《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条件；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内容。  **第二十六条**　邮政管理部门进行监督检查时，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二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应当记录监督检查的情况和处理结果，由监督检查人员签字后归档。  **第二十七条**　邮政管理部门进行监督检查时，不得妨碍经营快递业务的企业正常的生产经营活动，不得收取任何费用。  **第二十八条**　公民、企业和其他组织发现邮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在实施行政许可和监督检查过程中有违法行为，有权向邮政管理部门举报，接到举报的邮政管理部门应当及时核实、处理。  **第六章　法律责任**  **第二十九条**　违反本办法第五条、第十七条第一款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七十二条规定予以处罚。  **第三十条**　申请快递业务经营许可时，申请人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骗取经营许可的，由邮政管理部门依法撤销经营许可，并可处以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伪造、涂改、冒用、租借、买卖和转让《快递业务经营许可证》的，邮政管理部门可处以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一条**　快递企业设立分支机构、合并、分立，未向邮政管理部门备案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七十三条规定予以处罚。  　　除前款规定外，经营快递业务的企业，未按本办法规定办理备案、变更手续，或者未按期提交年度报告书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并可处以一万元以下的罚款；办理备案和变更手续、提交年度报告书，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并可处以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二条**　快递企业停止经营快递业务，未书面告知邮政管理部门并交回《快递业务经营许可证》，或者未按照国务院邮政管理部门的规定妥善处理尚未投递的快件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七十三条规定予以处罚。  **第三十三条**　违反本办法第二十四条规定，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第七十七条规定予以处罚。  **第三十四条**　经营快递业务的企业对邮政管理部门根据本办法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经营快递业务的企业逾期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由作出行政处罚决定的邮政管理部门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三十五条**　邮政管理部门工作人员在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主管机关或者监察机关给予行政处分；涉嫌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 则**  **第三十六条**　除本办法第十六条规定的企业外，《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公布前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后经营快递业务的企业，不具备经营快递业务的条件的，应当自本办法实施之日起一年内达到经营快递业务的条件，并依法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逾期不能取得快递业务经营许可的，不得继续经营快递业务。  **第三十七条**　本办法自2009年10月1日起施行。 |